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호 8500

제안연월일: 2025. 2.

제 안 자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 과
환경범죄 등의 단속		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
및 가중처벌에 관한	김형동의원	2024. 11. 14.	체회의(2025. 1. 9.) 상정 후 제안
법률 일부개정법률안			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
(제2205604호)			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환경범죄 등의 단속		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
및 가중처벌에 관한	피 게 쥐 시 시	0004 11 05	
법률 일부개정법률안	박해철의원	2024. 11. 25.	
(제2205849호)			(2025. 2. 13.)

나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18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2. 20.)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특정대기·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,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,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, 「잔 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.

이에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시설과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 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.

한편,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,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,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·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,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,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, 폐수, 토양,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동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는 등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을 확대함(안 제2조).
- 나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비정상운영행위, 통합하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,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,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12조)
- 다.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, 절차 속행 규정 흠결을 보완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를 신설하고, 양수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및 환경부 장관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(안 제14조)
- 라. 「지하수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함(안 제15조의2)
- 마.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 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

자료 제출 근거를 신설함(안 제17조)

바.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,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,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,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,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함(부칙 안 제1조)

법률 제 호
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
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"제25조제1항을"을 "제25조제9항제4호·제5호를"로 하며,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아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
- 파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
- 바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
- 사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,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

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아목까지의"를 "아목까지 또는 타목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제44조제10항"을 "제44조제13 항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 호 중 ",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"을 "또는 제46조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변경허가를"을 "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제29조제2항"을 "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, 제29조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, 제31 조제1항, 제32조제1호
- 마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
- 6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(이하 "양도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, 상속인 또는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(이하 "양수인등"이라 한다)에 승계되며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 또는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합병한 때에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양수인등이 양수·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, 사유,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수 있다.

제15조의2제1항제19호 중 "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"를 "제37조의3,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"로 하고,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9호 중 "제56조부터 제60조까지"를 "제56조부터 제58조까지. 제58조의2. 제59조 및 제60조"로 한다.

30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

제17조 전단 중 "행정처분을"을 "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, 제12조제1항제2호가목·제3호·제5호 각 목 외의 부분, 제1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오염물질"이란 다음 각 목	1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	
질을 말한다.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아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
	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잔
	<u>류성오염물질</u>
2. "불법배출"이란 다음 각 목	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(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	
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	
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	
의 행위를 포함한다)를 말한	
다.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「하수도법」 제19조제2	ㅂ}
항, 제39조제1항, 제43조제	
2항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	
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	
제17조제1항, <u>제25조제1항</u>	<u>제25조제9</u>
<u>을</u> 위반하는 행위	<u>항제4호·제5호를</u>

사. ~ 타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"배출시설"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.

가. ~ 마. (생 략)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4. ~ 8. (생략)

제12조(과징금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위반부과금액"이라 한다)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(이하 "정화비용"이라한다)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

사. ~ 타. (현행과 같음)
파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
법」 제14조제3항을 위반
하는 행위
3
<u>.</u>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
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배출시설
사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
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2호 나목, 사목 및 자목부
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
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과징금) ①

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 을 10억원 이내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 (제2조제2호가목부터 <u>아목까 지의</u> 행위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자

가. ~ 라. (생 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1 조제2항, 제32조제3항, 제39조제1항, 제44조제10항

1
아목까지
<u>또는 타목의</u>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
7}
제44조제13항

나.·다. (생략) <u><신 설></u>

- 3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 전 제1항, 제41조제1항 또는 제4 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,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 을 불법배출한 자
- 4. (생략)

가.·나. (생략) 다. 「폐기물관리법」 <u>제29조</u> 제2항 또는 제3항

	1. 1. (60 60/
	라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
	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	제1항, 제31조제1항, 제32
	조제1호
3.	
	또는 제46조제2항
	<u> </u>
4.	(현행과 같음)
5.	
	<u>변경</u>
	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
	인을
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	다 <u>제25조</u>
	제3항 또는 제11항, 제29조

나 ·다 (혀해과 간은)

라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⑧ (생 략) 제14조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사 제14조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① 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 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 다.

제2항--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 <u>1항 또는 제2항</u>

- <u>6. 「잔류</u>성오염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 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자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(이하 "양도인등" 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,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(이하 "양 수인등"이라 한다)에 승계되며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

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나한다.

② 양수인등이 양수·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, 사유,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종류, 사유,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환경감시관)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.

제15조의2(환경감시관) ①	

- 1. ~ 18. (생략)
- 19. 「지하수법」 제37조, 제37 조의2, <u>제37조의3 및 제38조</u> 부터 제40조까지
- 20. ~ 29. (생략)
- 30.
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

 관한 특별법」
 제40조부터

 제46조까지
- 31. ~ 38. (생략)
- 39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<u>제56조부터 제60조까지</u>

40. ~ 45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제1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환경부 7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<u>행정처분을</u>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19
<u>제37</u> 조의3, 제38조부
<u>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</u>
20. ~ 29. (현행과 같음)
30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
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45
조부터 제49조까지
31. ~ 38. (현행과 같음)
39
<u>제56</u> 조부터 제58조까지,
제58조의2, 제59조 및 제60조
40. ~ 4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관계 기관의 협조)
<u>행정처분과 환경법</u>
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
<u>.</u>